

## 32. 코스타리카(Costa Rica)

### ◎ 주요 변동사항

구 분	2017	2019	비 고
사회보험 임의가입 제도	無	有	임의가입 제도신설
보험료율(가입자/사용자)	(사회보험) 3.34% / 5.08% (개인계좌) 1% / 3.25%	(사회보험) 3.84% / 5.08% (개인계좌) 1% / 3.25%	0.5% ↑
보험료 부과 상한 / 하한 소득	없음 / 근로자·자영자 231,135colon	없음 / 근로자 309,143.36colon, 자영자·임의가입자 268,955colon	근 78,008.36 ↑ 자 37,820 ↑
연금수급 개시 연령	65세	65세	-
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	(조기) 300개월	(조기) 360개월로 완전연금과 동일	60개월 ↑
사회보험 연금의 해외지급	불가	가능	-

### 1 근거법 제정 시기

- **최초법** : 1941년(사회보험기금)
- **현행법** : 1992년(연금), 1995년(자영자), 1995년(개인계좌), 2000년(근로자 보호), 2005년(노령, 장애, 유족연금)

### 2 제도형태

- **사회보험 및 개인계좌**  
※ 가족수당제도에 의하여 특정 노인, 장애인, 유족에게 수당이 지급됨

### 3 적용대상

- **사회보험**
  - 당연적용 : 코스타리카에서 거주하는 공공 및 민간부문의 근로자와 자영자, 임의가입가능
  - 특별제도 : 교사 및 법무부서 근로자
- **개인계좌**
  - 당연적용 : 2005년 기준 55세 미만인 공공 및 민간부문 근로자

- 적용제외 : 자영자

## 4 재원조달

### ○ 가입자

- 사회보험 : 총 소득의 3.84%(2035년까지 최대 4.5%로 점진적 상향), 임의가입자의 경우 5개 소득항목에 기반하여 월 급여액의 3.67%에서 7.93% 납부
 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하한소득은 309,143.36colon(2019년 1월 기준), 임의가입자는 268,955colon(2019년 6월 기준)이며 상한소득 없음
- 개인계좌 : 소득의 1%에 행정수수료를 위하여 계좌 잔액의 최대 0.5%까지 가산(2019년 10월 기준)

### ○ 자영자

- 사회보험 : 5개 소득항목에 기반하여 월 급여액의 3.67%에서 7.93% 납부.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하한소득은 268,955colon(2019년 6월 기준)이며 소득 상한선 없음
- 개인계좌 : 해당 없음

### ○ 사용자

- 사회보험 : 임금지급총액의 5.08%(2035년까지 최대 5.75%로 점진적 상향).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하한소득은 309,143.36colon(2019년 1월 기준)이며 소득 상한선 없음
- 개인계좌 : 임금지급총액의 3.25%

### ○ 정부

- 사회보험 : 모든 근로자 총소득의 1.24%(2035년까지 최대 1.91%로 점진적 상향), 자영자와 임의가입자(공시소득에 비례)는 5개 소득항목에 기준 0.99%에서 4.95% 납부
- 개인계좌 : 없음

## 5 급여종류별 수급요건

### ○ 노령급여

- 노령연금(사회보험)
  - 보험료 납부기간이 300개월 이상인 65세 도달자. 보험료 추가 납부월수에 따라 수급 개시연령은 61세 11개월(납부기간이 462개월 이상인 남자) 또는 59세 11개월(납부기간이 450개월 이상인 여자)로 감소됨
  - 부분연금 : 납부기간이 180개월 이상 300개월 미만인 65세 도달자
  - 조기연금 : 납부기간이 360개월(2019년 9월까지 420개월로 상향조정예정) 이상인 62세 (여성 60세) 도달자(조기연금제도는 2021년 3월까지 단계적 폐지 예정임)

- 연기연금 가능
- 퇴직 불필요(공무원 제외)
- 노령연금 해외지급 가능
- 노령연금(개인계좌)
  - 보험료 납부기간이 300개월 이상인 65세 도달자. 보험료 추가 납부월수에 따라 수급 개시연령은 61세 11개월(납부기간이 462개월 이상인 남자) 또는 59세 11개월(납부기간이 450개월 이상인 여자)로 감소됨. 사회보험연금을 수급할 수 없는 가입자는 65세 도달시 자신의 계좌에 적립된 기금인출 가능

## ○ 장애급여

- 장애연금(사회보험)
  - 정상소득능력을 66.7% 이상 상실한 것으로 판정된 자로, 최소 보험료 납부기간이 12개월(24세 이하인 경우) 에서 120개월(48세 이상인 경우)이어야 하며, 장애 발생 전 2년 동안 보험료 납부기간이 12개월(48세 이하) 또는 장애 발생 전 4년 동안 보험료 납부기간이 24개월 이상(48세 초과자)인 자에게 지급. 보험료 납부기간이 180개월 이상인 경우 장애 발생 전 납부기간 요건 없음
  - 부분연금 : 장애 발생 전 2년 동안 보험료 납부기간이 12개월(48세 이하) 또는 장애 발생 전 4년 동안 보험료 납부기간이 24개월 이상(48세 초과자)인 것을 포함하여 총 보험료 납부기간이 60개월 이상이며 정상 소득능력을 66.7% 이상 상실한 것으로 판정되었으나 장애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
  - 장애연금은 퇴직연령 도달 시 중단되고 노령연금으로 대체
  - 장애연금 해외지급 가능

## ○ 유족급여

- 유족연금
  - 사망자가 노령 또는 장애연금을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, 사망 전 최종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또는 총 보험료 납부기간이 180개월 이상인 경우 지급
  - 수급가능 유족 : 배우자, 동거하는 파트너, 18세 이하의 자녀(학생의 경우 25세, 장애아는 연령제한 없음). 수급가능 유족이 없을 경우 피부양 부모와 형제
  - 재혼 또는 동거 시, 유족연금은 정지됨
- 유족일시금
  - 사망자가 최소 12개월의 납부기간이 있는 경우, 유족연금 대상이 아닌 수급가능 유족에게 지급
  - 수급가능 유족 : 배우자, 동거하는 파트너, 18세 이하의 자녀(학생의 경우 25세, 장애아는 연령제한 없음). 수급가능 유족이 없을 경우 피부양 부모와 형제
- 장제비 :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거나 사망 전 최종 6개월 중 최소 3개월 이상 납부한 경우 지급

## ○ 노령급여

- 노령연금(사회보험)
  - 최종 240개월 동안의 재평가된 가입자 평균소득의 43%(법정 월 평균 최저임금의 8배 이상) ~ 52.5%(법정 월 최저임금의 2배 이하)에 240개월 초과 보험료 납부기간 1개월 당 평균소득의 0.0833%씩 산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연금액 결정
  - 소득은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 조정
  - 법정 월 최저임금 : 직업에 따라 309,143.36 ~ 663,772.10colon
  - 월 최저연금액 : 136,865 colon(산정된 연금액이 이보다 적을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)
  - 월 최대연금액 : 1,612,851 colon
  - 부분연금 : 완전연금 수령에 필요한 300개월 미만의 기여분에 대해 비례적 감액
  - 조기연금 : 정상수급연령 도달 전 3개월 당 1.75%씩 감액하여 지급(조기연금은 2021년 3월까지 단계적으로 폐지), 월 최저연금액이상이어야 함
  - 연기연금 : 정상 수급연령 이후 연기되는 1개월 당 최종 240개월 동안의 평균소득 0.133%씩 증가. 최대 연기연금액은 월 2,282,184 colon
  - 지급일정 : 연 13회
  - 급여조정 : 생계비와 임금의 변동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에 조정
- 노령연금(개인계좌) : 정기적인 인출 또는 연금 중 선택 가능. 월별 개인계좌연금액이 가입자의 월 사회보험 노령연금의 10%미만인 경우 계좌 잔액 일시금 인출 가능

## ○ 장애급여

- 장애연금(사회보험)
  - 연금대체율은 장애 발생 전 60개월 동안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지수에 따라 달라짐. 최종 240개월 동안의 재평가된 가입자 평균소득의 43%(법정 월 최저임금의 8배 이상) ~ 52.5%(법정 월 최저임금의 2배 이하)에 240개월 초과 보험료 납부기간 1개월 당 평균 소득의 0.0833%씩 산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연금액 결정.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기간이 240개월 미만인 경우 전체 보험료 납부기간을 고려
  - 소득은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 조정
  - 법정 월 최저임금 : 직업에 따라 309,143.36 ~ 663,772.10colon
  - 월 최저연금액 : 136,865 colon(산정된 연금액이 이보다 적을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)
  - 월 최대연금액 : 1,612,851 colon
  - 부분연금 : 완전연금 수령에 필요한 기간 미만의 기여분에 대해 비례적 감액
  - 지급일정 : 연 13회
  - 급여조정 : 생계비의 변동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에 조정됨

## ○ 유족급여(사회보험)

- 배우자연금 : 배우자가 50세 미만인 경우 사망자가 수급 중이거나 수급요건을 충족한

- 연금액의 50%,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경우 60%, 60세 이상인 경우 70% 지급
- 고아연금 : 사망자가 수급 중이거나 수급요건을 충족한 연금액의 30%를 각 수급 가능한 자녀에게 지급, 완전고아인 경우 60%
- 기타 수급가능 유족 : 배우자 또는 고아가 없는 경우, 사망자가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요건을 충족한 연금액의 20%를 각 피부양 부모 및 피부양 형제자매에게 지급, 55세 이상인 자에게는 60% 지급
- ※ 총 유족연금 합산액은 사망자가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요건을 충족한 연금액의 100%를 초과할 수 없음
- 급여조정 : 연금은 생계비의 변동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에 조정됨
- 유족일시금 : 사망자의 최종 12개월 평균소득의 8.33%를 총 납부월수로 곱한 금액
- 장제비 : 가입자 또는 수급자의 장례식비로 95,000 colon을 일시금으로 지급. 배우자 또는 동거인에게 63,000 colon 지급

## 7

### 관리운영기관

- **코스타리카 사회보험기금(Costa Rican Social Insurance Fund)**
  - [www.ccss.sa.cr](http://www.ccss.sa.cr)
  - 집행 위원장과 9명의 위원에 의해 관리
  - 사회보험제도 운영, 사회보험제도 및 의무개인계좌제도 보험료 징수
- **국가감사원(State Auditor)**
  - 사회보험기금의 재정운용 감독
- **재정감독 국가위원회(National Council for the Supervision of the Financial System)**
  - 규제 감독
- **연금감독국(Superintendent of Pensions)**
  - [www.supen.fi.cr](http://www.supen.fi.cr)
  - 연금 운영자 규제 및 감독
- **연금운영자(OPCs, Pension operators) : 개인계좌 운영**

<2019년 ISSA 자료>